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What Libertarianism Is

Stephan Kinsella *

번역: 김경훈 연구원 (미제스 코리아)

1 ‘일관성 있는’ 재산, 권리, 자유의 사상	2
2 재산으로서의 신체	7
3 갈등을 피하는 유일한 길: 개인의 자기소유	12
4 ‘정당한’ 사유재산의 형성	16
5 번영과 자유를 위한 최선의 사상	24

*스텝안 킨젤라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활동하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이자 자유주의 사상가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거장 한스-헤르만 호페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자 공인된 호페 전문가로도 유명한 그는 미제스, 라스바드, 호페 등 선대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하여 자유주의 법학을 개척한 선구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일관성 있는’ 재산, 권리, 자유의 사상

자유주의자들이 서로 동의하는 다양한 정책과 원칙이 있다. 그럼에도, 자유주의를 규정하는 특성이 무엇인지, 즉 자유주의가 다른 정치적 이론 및 제도와 구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이 존재한다. 자유주의를 개인의 권리, 재산권¹⁾, 자유시장, 자본주의, 정의, 혹은 ‘비침해의 원칙’(the nonaggression principle)의 사상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매우 널리 알려진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 중 그 어떤 것도 자유주의의 본질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자유주의 사회에서 발생하거나 받아들여진 ‘교환적’(catallactic) 조건에 대한 묘사이다. 그것 자체만으로

1) 자유주의자들은 종종 ‘사유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나는 이 점이 늘 이상하다고 생각해왔다. 비소유자가 무단침입을 피할 수 있도록 재산의 영역이나 경계를 반드시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은 필연적으로 ‘공적’(public)이지 ‘사적’(private)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산의 경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Hans-Hermann Hoppe, *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Economics, Politics, and Ethics*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9), pp. 140–41; Stephan Kinsella, “A Libertarian Theory of Contract: Title Transfer, Binding Promises, and Inalienability,”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17, no. 2 (Spring 2003): n. 32와 첨부된 텍스트; idem,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Auburn, Ala.: Ludwig von Mises Institute, 2008), pp. 30–31, 49; 그리고 Randy E. Barnett, “A Consent Theory of Contract,” *Columbia Law Review* 86 (1986): 303를 보라.

자유주의의 다른 측면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권리, 정의, 침해도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개념으로서 자유주의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재산권에 관련된 사안에 불과하다. 머레이 라스바드가 설명했듯이, 개인의 권리는 재산권이다.²⁾ 그리고 정의는 그저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³⁾

비침해의 원칙 역시 재산권에 의존하는 개념이다. ‘침해’(aggression)가 무엇인가는 곧 우리의 (재산) 권리가 무엇인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나를 때린다면, 그것은 내가 나의 신체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해이다. 만약 내가 당신의 사과를 가져간다면, 이것은 오직 당신이 그 사과에 대한 정당한 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도 무단침입, 즉 침해이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상응하는 재산권을 가진다고 암묵적으로 할당하지 않고선 침해 행위는 식별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너무 좁은 개념이다. 정

2) Murray N. Rothbard, “‘Human Rights’ As Property Rights,” in *The Ethics of Liberty*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8); idem, *For A New Liberty: The Libertarian Manifesto* (rev. ed.; New York: Libertarian Review Foundation, 1985), pp. 42 et pass.

3) “정의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제시하려는 끊임없고 영원한 소망이다... 법의 격언은 다음과 같다. 정직하게 사는 것,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 *The Institutes of Justinian: Text, Translation, and Commentary*, trans. J.A.C. Thomas (Amsterdam: North-Holland, 1975)

의, 개인의 권리, 침해는 모두 재산권의 관점으로 귀결되거나 설명된다. 그렇다면, 재산권은 무엇인가? 재산권이 자유주의를 다른 정치철학과 차별화하는 요소인가? 오직 자유주의만이 재산권을 선호하고, 다른 정치철학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물론 이런 부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결국, 재산권은 그저 희소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일 뿐이다.⁴⁾ 재산권은 주어진 ‘지역’(region) 혹은 ‘관할권’(jurisdiction)의 다양한 희소 자원을 어떤 개인이 소유하는지 (즉 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명시한다. 그리고 모

4) 이아노폴로스 교수(A.N. Yiannopoulos)의 설명에 따르면:

재산은 경제적 재화를 통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로 정의될 수 있다. ...; 그것은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통솔하는 권리와 의무, 특권과 제약을 가리키는 개념의 이름이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생존을 위해 혹은 문화적 정의에 따라 가치있는 것을 위해 사물들의 소유를 원하고, 그러한 수요의 결과로서 희소가 발생한다. 조직화된 사회에 의해 시행되는 법은 사람들이 바라는 사물에 대한 경쟁을 통제하고, 향유를 보장해준다. 자신의 것으로 보장되는 것이 재산이다. ... [재산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A.N. Yiannopoulos, *Louisiana Civil Law Treatise, Property* (West Group, 4th ed. 2001), §§ 1, 2. 또한 *Louisiana Civil Code*, Art. 477를 보라. (“소유권’(ownership)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물을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배타적으로 통제할 권한을 주는 권리이다. 무언가에 대한 소유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과 한계 내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향유하고, 처분할 수 있다.”)

든 사람과 모든 정치 이론이 재산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이론을 제시한다. ‘사회적으로 부정된’ 재산권의 다양한 형태들 중 어느 것도 재산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사회적으로 부정된 재산권의 개별 사례는 모든 희소 자원에 대한 소유자를 명시한다.⁵⁾ 만약 국가가 산업을 국유화한다면, 그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당신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암묵적으로 당신이 취득한 자금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 나의 토지가 악명높은 수용권 법령에 의해 민간 개발업자에게 이전된다면, 개발업자는 이제 새로운 소유주가 된다. 만약 인종 차별의 피해자가 자신의 고용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법이 보상을 명령한다면, 그는 보상으로 지급된 돈의 주인이 된다.⁶⁾

5) 러시아식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적 사회주의, 보수주의적 사회주의, 그리고 사회공학적 사회주의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Hoppe, *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chapters 3-6를 보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와, 그것들과 자유주의(자본주의)의 구별을 인식한 호페는, 사회주의를 “사유재산권 및 사유재산권 주장에 대한 제도화된 간섭 혹은 침해”라고 명쾌하게 정의한다. Ibid., p. 2. 마찬가지로 9번 각주에서의 호페 인용을 참고하라.

6) 당신의 시계를 강탈하는 도둑조차도, 자신이 그 시계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믿음을 암묵적으로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도둑이 재산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소유자가 누구냐에 대하여 자유주의자와 다른 견해를 가질 뿐이다. 사실, 아담 스미스가 관찰한 바처럼, “도둑과 살인자들 사이에 어떤 사회가 있을 경우, 진부한 논평에 따르면, 그들은 최소한 자기들끼리 서로 털거나 죽이는 것

따라서 재산권의 보호와 존중은 자유주의의 특별한 요소가 아니다. 자유주의를 자유주의로 만드는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만의 독특한 ‘재산 할당 규칙’, 즉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자원’의 소유주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한 자유주의의 견해에 있다.

은 참가야 한다.” Adam Smith,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Indianapolis: Liberty Fund, [1759] 1982), II.II.3

재산으로서의 신체

‘재산권 제도’는 모든 희소자원에 특정한 소유자를 배정한다. 희소자원의 대표적인 예시는 토지, 나무의 열매 등 천연자원이다. 그러나 자연에서 발견되는 물체만이 유일한 희소자원인 것은 아니다. 모든 인간 행위자는 고유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신체와 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신체를 통제할 수 있고, 심지어 그것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신체 역시 하나의 희소자원에 해당한다.⁷⁾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자들은, 신체를 비롯한 모든 희소자원을 수단으로 이용하길 바란다.

7) 호페가 말하듯, 재화가 넘쳐나는 낙원에서:

모든 사람의 신체는 여전히 희소자원일 것이다. 그렇다면, 재산 규칙의 형성, 즉, 개인의 신체에 대한 규칙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체로 사람들은 신체를 희소재로 이해하는 관점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예컨대 에덴 동산 따위를 상상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의 신체가 희소재의 ‘원형’(prototype)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산권, 즉 ‘독점적 소유의 권리’의 확립 역시 어떤식으로든 필요하다는 점 역시 파악할 수 있다.

Hoppe, *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pp. 8–9. 또한 Stephan Kinsella & Patrick Tinsley, “Causation and Aggression,”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7, no. 4 (Winter 2004) 111–12를 보라(다른 사람의 몸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글이다).

그리하여, 어떤 정치이론 혹은 체제라 할지라도, 외부사물과 신체 모두에 소유권을 배정해야만 한다. 우선, 자유주의 재산 할당 규칙이 신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신체에 대한 침해 개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자유주의자들은 대체로 비침해의 원칙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랜드(Ayn Rand)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이 서로 공존하기를 원하는 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 대한 물리적 힘의 사용을 ‘개시’(initiate), 즉 ‘시작’(start)해선 안될 것이다.”⁸⁾ 혹은, 라스바드의 표현에 따르면:

자유주의 신조는 하나의 핵심적 공리, 어떤 사람 혹은 집단이라도, 다른 사람의 신체 혹은 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는 ‘비침해성의 공리’(non-aggression axiom)에 의존하고 있다. 침해는 다른 사람의 신체 혹은 재산에 대한 물리적 폭력의 사용, 혹은 위협의 개시라고 정의된다. 이런 점에서, 침해는 ‘침입’(invasion)과 동의어이다.⁹⁾

8) Ayn Rand, “Galt’s Speech,” in *For the New Intellectual, The Ayn Rand Lexicon*, “Physical Force”에서 인용함. 역설적이게도, 객관주의자들은 종종 자유주의자들을 비난하곤 한다. 자유주의의 침해 개념이 맥락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침해’ 혹은 ‘권리’라는 개념들이 ‘객관주의’(objectivism)라는 더 큰 철학적 틀에 근거하지 않는 한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소설의 주인공 골트(John Galt)가 침해를 ‘다른 사람에 대한 물리적 힘의 개시’라고 매우 명료하게 정의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9) Rothbard, *For A New Liberty*, p. 23. 그리고 idem, *The Ethics of Liberty*도 보라: “자유주의 이론의 근본적 공리는, 모든 사람이 ‘자기소유자’(self-owner)가 되어야 하고, 그 누구도 그러한 자기소유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p. 60), 그리고 “... 침해적 폭력은

즉, 자유주의자들은 권리를 침해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력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곧 ‘침해를 저지르는 것’이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무력의 개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지만, 방어, 배상, 보복, 처벌 등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무력 행사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¹⁰⁾

이제 우리는 신체에 대한 침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것은 흔히 ‘구타’(battery)라고 불리는 행위, 즉 ‘다른

한 사람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의 재산에 침입함을 의미한다. 침입은 (신체적 폭행의 경우) 피해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행해질 수 있고, (강도 혹은 사유지 무단침입의 경우) ‘유형의 재화’(tangible goods)에 대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p. 45) 또, 호페가 쓰기를:

불청객이 ‘다른 사람의 신체적 무결성’에 침입하거나 변화시켜 그 신체를 당사자의 취향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 그러한 행동을 **침해**라고 한다. ... 행동의 개념 다음으로 중요한 사회과학의 기본 범주는 **재산**이다. 사실, 이 장에서 소개될 다른 모든 개념들, 즉 침해, 계약,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모두 재산의 맥락에서 정의되는 것이다. **침해**는 재산에 대한 침해이다. **계약**은 재산 소유자들 사이의 비침해적 관계이다. **사회주의**는 재산에 대한 침해의 제도화된 정책이다. **자본주의**는 재산과 ‘계약주의’(contractualism)를 인정하는 제도화된 정책이다.

Hoppe, *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pp. 12, 7.

- 10) Stephan Kinsella, “A Libertarian Theory of Punishment and Rights,” *Loyola of Los Angeles Law Review* 30 (1997): 607–45; 그리고 idem, “Punishment and Proportionality: The Estoppel Approach,”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12, no. 1 (Spring 1996): 51–73를 보라.

사람의 몸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자면, 신체에 대한 침해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다.¹¹⁾ '대인간' 침해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신체에 대한 재산권을 전제로 한다. 즉, 대인간 침해는 개인이 자기 신체의 소유주라는 주장을 최소한 '잠정적으로나마 자명한'(prima facie) 것으로 인정해야만 발생할 수 있다.¹²⁾

자유주의가 아닌 정치철학은 다른 견해를 표한다. 즉, 개인은 '자기 신체에 대해 완전하거나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라, 오직 제한된 권리만을 가진다는 것이다. 대신에, 사회 혹은 (사회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국가가 개별 시민의 신체에 일정한 권리를 소유한다. 이러한 '부분적 노예제'는 세금, 징병, 마약금지 등 여러 국가 조치 및 법령에 암시되어 있다.

11) 문맥에 따라 다음의 용어와 공식은 대체로 동의어로 간주될 수 있다: 침해, '힘의 개시'(initiation of force), '무단침입'(trespass), 침입, 다른 사람의 신체적 무결성 (혹은 사용, 통제, 소유)에 동의받지 않고 (혹은 초대받지 않고) 변화를 가하는 것.

12)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날지라도) 처음에는 진실로 여겨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신체에 대한 일부 권리가 분명 박탈당하거나 상실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범죄의 피해자는 분명 범죄자에 맞선 방어력의 행사를 허락받아야만 한다. 이 점에 대해 더 살펴보고자 한다면, Kinsella, "A Libertarian Theory of Contract," pp. 11-37; idem, "Inalienability and Punishment: A Reply to George Smith," 14, no. 1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Winter 1998-99): 79-93; 그리고 idem, "Knowledge, Calculation, Conflict, and Law,"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2, no. 4 (Winter 1999): n. 32를 보라.

자유주의자는 개인이 자기 신체의 완전한 주인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자신의 몸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 개별 인간으로서 우리는 마약을 복용할지의 여부, 군대에 입대할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의 금지 조치를 지지하는 다양한 비(非)자유주의자들은, 국가 혹은 사회가 법령에 의거하여 사람들의 신체를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비침해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군대에 징집당해 평생 감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완전히 소유권을 가진다고까지 주장한다. 요컨대, 자유주의자들은 ‘자기소유’(self-ownership)를 믿는다. 반면 모든 유형의 비자유주의자들, 즉 국가주의자들은, 반드시 어떤 형태의 노예제를 옹호하는 것이다.

갈등을 피하는 유일한 길: 개인의 자기소유

재산권이 없다면, 경합적인 (희소) 자원에 대한 충돌의 위험은 항상 도사린다. 법 체계는 각 자원의 소유자를 배정하고, 비소유자가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회피할 수 있는 재산의 가시적인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충돌 없는 자원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여러 재산 할당 규칙 중에서 ‘자기소유’를 선호한다. 이는 ‘타자소유’(other-ownership), 즉 노예제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¹³⁾

자유주의자는 정의, 평화, 번영, 협력, 갈등 회피, 문명 등 다양한 ‘근본규범’(grundnorms)¹⁴⁾을 받아들이거나 가치있다

13) 재산 규칙의 출현에 있어 ‘희소성’(scarcity) 개념과 ‘갈등’(conflict)의 가능성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Hoppe, *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p. 134를 보라;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로서 Stephan Kinsella, “Thoughts on the Latecomer and Homesteading Ideas; or, Why the Very Idea of ‘Ownership’ Implies that only Libertarian Principles are Justifiable,” *Mises Economics Blog* (Aug. 15, 2007)를 보라.

14) 근본규범은 법 체계가 가지는 합법성의 기초 혹은 궁극적 원천으로 작용하는 가설적인 기본 규범 혹은 규칙을 뜻하는 용어로서, 법철학자 켈젠(Hans Kelsen)이 처음 사용하였다. Hans Kelsen, *General Theory of Law and State*, trans. Anders Wedberg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49)를 보라. 나는 이 용어를 문명인이 전제하는 기본적 규범들, 예컨대 결국 자유주의 규범을 암시하는 ‘논쟁적 담론’(argumentative discourse)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사실, 자유주의적 근본규범은 모든 문명인이 그들이 문명화된 정도까지 ‘논쟁적 정당화’(argumentative justification)의 과정에서 반드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호페가 자유주의 권리이론에 대

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산 할당 규칙을 탐구한다. 그리고 자기소유가 이러한 근본규범들과 양립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 할당 규칙이라는 것이 자유주의적 견해이다. 그러한 사실은 상기한 근본규범 자체에 의해 암시되고 있다. 호페 교수가 보여주었듯이, 분쟁 회피의 기능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재산 규범은, 주어진 자원에 대한 소유권의 배정을 무작위적이거나, 임의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편향적으로 행해선 안된

한 자신의 ‘논증윤리’(argumentation ethics) 논변에서 보여준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Hoppe, *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chapter 7; Stephan Kinsella, “New Rationalist Directions in Libertarian Rights Theory,”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12, no. 2 (Fall 1996): 313–26; idem, “Defending Argumentation Ethics,” *Anti-state.com* (Sept. 19, 2002)를 보라.

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이러한 근본규범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더 알고 싶다면, Stephan Kinsella, “The Division of Labor as the Source of Grundnorms and Rights,” *Mises Economics Blog* (April 24, 2009), 그리고 idem, “Empathy and the Source of Rights,” *Mises Economics Blog* (Sept. 6, 2006). 또한 idem, “Punishment and Proportionality,” pp. 51 와 pp. 70에서 말하듯:

문명화된 사람들은 ... 처벌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 염려한다. 그들은 처벌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처벌이 정당한 이유를 알고 싶어한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기를 원한다. ... 처벌에 대한 이론은 처벌의 정당화를 다룬다. 그것은 부도덕한 행동을 싫어하는 점잖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는 물론 도덕적인 사람들이 그들을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맞설 수 있다는 본보기와 확신을 심어주는 데 유용하다.

다.¹⁵⁾ ‘재산의 소유권’(property title)은 ‘소유자와 제기된 자원 사이의 객관적이고 상호주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결의 존재’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경쟁하는 권리 주장자 중 한 명에게 배정되어야 한다.¹⁶⁾ 신체 소유권의 경우, 분명 모든 사람은 자기 신체에 대해 제3의 권리 주장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근거는, 특정 사람과 특정 신체 사이의 독특한 관계, 즉, ‘직접적이고 즉각적인’(direct and immediate) 통제에 있다.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신체가 곧 주어진 사람과 다름없고,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타인의 신체를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외부인이라면, 누구나 이 객관적 연결고리와 그 특수한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그 외부인 역시 자신에 대해서 반드시 이 연결고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지배를 추구하고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는 자기 신체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즉, 외부인은 사람-신체 연결고리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동시에,¹⁷⁾ 그러한 연결고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15) Hoppe, *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pp. 131–38를 보라. 또한 Kinsella, “A Libertarian Theory of Punishment and Rights,” pp. 617–25; idem, “Defending Argumentation Ethics”를 보라.

16) Hoppe, *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p. 12.

17) 이 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Stephan Kinsella, “How We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오직 자기소유의 법칙만이 보편화될 수 있고, 평화, 협력, 갈등 회피라는 목표와 양립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자유주의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신체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자명한’ 소유자라는 점을 인지한다. 자기 자신이 자기 신체에 대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독특한 연결고리 덕분에,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자기 신체에 대해 더 나은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Come To Own Ourselves,” *Mises Daily* (Sept. 7, 2006); idem, “Defending Argumentation Ethics”; Hoppe, *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chapters 1, 2, and 7를 보라. 또한 Hoppe, “The Idea of a Private Law Society,” *LewRockwell.com* (August 1, 2006)에 따르면:

회소성으로 가득 찬 에덴 동산의 밖에서는, (사회적 질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즉,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규칙의 필요성) 이 4개의 상호관련된 규칙에 의해 제공된다. ... 첫째, 모든 사람은 자기 신체에 대한 적절한 소유자이다. 크루소가 아니라면 누가 크루소 몸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만약 크루소가 자기 신체의 주인이 될 수 없다면, 그것은 노예제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노예제도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정당한’ 사유재산의 형성

다른 희소자원, 즉, 신체와 달리 어떤 시점에서 ‘소유되지 않은’(unowned) 세계 속의 ‘외부물체’(external objects)에 대해서도 자유주의자는 신체의 경우와 유사한 추론을 적용한다. 침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발상은, 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자기소유를 암시한다. 반면에 외부물체의 경우, 침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부물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외부물체 역시 희소성을 가지기에 갈등의 가능성이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희소한 외부물체에 대한 재산권이 신체의 경우처럼 평화적이고, 갈등을 회피할 수 있고, 생산적인 사용이 가능하게끔 할당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신체와 마찬가지로, 외부물체의 경우에도, 재산은 최선의 ‘청구’(claim) 기준, 즉 주어진 희소자원과 가장 근접한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에게 할당된다. 최선의 청구 기준은 평화적이고 갈등없는 인간의 상호작용과 자원의 사용이라는 목표에 근거한다.

그러나, 신체와 달리, 외부물체는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아니고, 자기 의지에 따라 직접 통제되지도 않는다. 또 매우 중요한 특성으로, ‘애초에는 소유되지 않은’(initially unowned)

것이다.¹⁸⁾ 여기서, 자유주의자가 보기에 외부물체와 사람 사이의 객관적 연결고리는 ‘전용’(appropriation)이다. 이는 이전에 소유되지 않은 자원의 ‘변형’(transformation) 혹은 ‘내 것으로 만듦’(embordering)이고, 다른 말로 하면 ‘로크적 정주/홈스테딩’(Lockean homesteading), 즉 ‘사물의 최초 사용 혹은 점유’이다.¹⁹⁾ 이러한 접근방법에 따라, 이전에 소유되지

18) 권리의 목적에 있어 신체와 전용된 사물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추가 논의를 알고 싶다면, Kinsella, “A Libertarian Theory of Contract,” pp. 29 et seq.; 그리고 idem, “How We Come To Own Ourselves.”를 보라.

19) 소유되지 않은 희소자원에 대한 전용의 본질에 대하여, Kinsella, “Thoughts on the Latecomer and Homesteading Ideas,”에서 인용된 호페의 논의와 드 자사이(Anthony de Jasay)의 사상과, 하단의 각주 24번, 이어서 특히 Hoppe, *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pp. 13, 134–36, 142–44; 그리고 Anthony de Jasay, *Against Politics: On Government, Anarchy, and Order*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7), pp. 158 et seq., 171 et seq., et pass를 보라. 드 자사이는 마찬가지로 나의 “Book Review of Anthony de Jasay, *Against Politics: On Government, Anarchy, and Order*,”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1, no. 3 (Fall 1998): 85–93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드 자사이의 논증은 정의, 효율성, 그리고 질서의 가치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감안할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치 원칙을 주장한다: (1) 불확실한 경우, 정치적 행동을 자제하고, (pp. 147 et seq.); (2) 그 정당성이 명확한 것들은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며(the feasible is presumed free), (pp. 158 et seq.); (3) 배제는 수립한다. (pp. 171 et seq.). 세번째 원칙, “배제는 수립한다”(let exclusion stand)에 대하여, 드 자사이는 소유되지 않은 재화의 정주 혹은 전용의 본질에 대해 통찰력있는 논평을 제공한다. 드 자사이는 소유자가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제’(excluding)함으로써 재산과 소유자가 동일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소유자는 자기 부동산(토지)에 울타리를 둘러서 접근을 차단할 수 있고, 동산(유형적, 물리적 사물)의 경우 그것을 발견하거나 창조한 후 ‘보관’(keeping)

않은 사물의 ‘첫번째/선행하는’(the first/prior) 사용자는, 단지 그가 더 먼저 그러했다는 이유만으로, ‘두번째/후행하는’(a second/later) 사용자보다 ‘잠정적으로 자명한’ 더 나은 청구권을 가진다.

왜 전용이 소유권 결정을 해결할 실마리인가? 우선적으로, “희소자원인 외부물체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라는 우리의 질문을 상기해보라. 그리고, ‘소유’(ownership)는 ‘통제’(control), ‘사용’(use), ‘점유’(possess)할 권리(right)인 반면에,²⁰⁾ ‘점유함’(possession)은 ‘실제적인 통제’(actual control), 즉 물질적 사물에 대해 사람이 행사하는 ‘사실상의 권위’(factual authority)라는 점 역시 상기해보라.²¹⁾ 다시 말해, 문제가 되는 사안

함으로써 타인의 사용을 막을 수 있다. 전용된 사물에 다른 소유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최초의 점유자에게 이익을 제기할 자격이 ‘잠정적으로 없다고’ 드 자사이는 결론짓는다. 따라서, “배제는 수립한다”는 원칙은 “소유권은 수립한다”(let ownership stand)를 의미한다. 즉, 자연 상태에서 전용되거나, 또는 그러한 전용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소유권의 연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논증은 호페가 재산의 ‘자연적’ 이론을 옹호하는 논리와 일치한다. Hoppe, *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pp. 10–14 그리고 chapter 7를 보라. 전용의 본질에 대한 추가 논의에 대해서는, Jörg Guido Hülsmann, “The A Priori Foundations of Property Economics,”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7, no. 4 (Winter 2004): 51–57를 보라.

20) 상기한 4번 각주의 내용을 보라.

21) Yiannopoulos, *Property*, § 301; 또한 *Louisiana Civil Code*, Art. 3421를 보라. (“점유는 동적이거나 부동산적인 ‘물질적 사물’(corporeal thing)의 ‘구금’(detention) 혹은 ‘향유’(enjoyment)이다. 소유자가 스스로 그것을 소지하거나 행사하

은 누가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즉, 자원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묻는 것은, 소유권과 점유함의 구별, 다시 말해 ‘통제할 권리’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제’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이전에 소유되지 않았던’ 존재로서 사물의 본질을 고려해야 한다. 외부물체는 신체와 어느 시점에 들어서야 최초 소유자의 소유가 되었다는 점이,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인 실마리로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당초 이러한 물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분쟁 없는 자원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의 발견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자원을 당장 가지고 있는 누구나’ 혹은 ‘자원을 취할 수 있는 누구나’ 그것의 소유자라는 견해는 해답이 될 수 없다. 그러한 견해는 소유권과 전유함 사이의 구별이 결여되어²²⁾ 사실상 전유함만이 존재하는 ‘힘이 권리를 결정짓는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갈등을 회피하기는 커녕,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든다.²³⁾

는 경우, 혹은 ‘소유자의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행사하는 경우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22) 이와 관련하여 상기한 6번 각주의 아담 스미스 인용을 참고하라.

23) 우연히도, 이것은 토지소유에 대한 ‘상호주의자’(mutualist)의 ‘사용’(occupancy)적 입장이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이유를 보여준다. 나

힘이 권리를 결정짓는 제도 대신에, 상기한 소유권과 점유함을 구별하는 통찰에 따른다면, 소유권이 ‘선행과 후행의 구별’을 전제로 함은 명백해진다. 이런 구별에 기초한 제도에서 자원의 소유자로 지정된 사람은, ‘후발주자’보다 더 나은 청구권을 가진다.²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소유자’(owner)가 아니라] 단지 현재 ‘사용자’(user) 혹은 ‘점유자’(possessor)에 불과하다. 만약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힘이 권리를 만드는 원칙’에 따라 그를 소유자로 인정한다면, 그러한 조치는 우리의 탐구 자체의 전제와 모순되는 것이다. 만약 최초 소유자가 후발주자들보다 더 나은 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면, 그는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라고 불려야 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후발주자의 청구권은 “1. 자원을 최초로 정주한 당사자이거나, 2. 이전 소유자 혹은 ‘정주자’(homesteader)까지 ‘추적가능한’ 소유권을 보유한” 선행

의 다른 글 “A Critique of Mutualist Occupancy”에서 이 점은 자세히 논의된 바 있다. [역주: 사실 “A Critique of Mutualist Occupancy”는 원래 이 각주의 내용이다. 그러나, 미세스 연구소 측에서 이 논문을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과정에서 23번 각주의 내용을 별개로 분리하여 새로운 글로 게시하였다. 23번 각주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을 기술하는 내용인데, 그 분량이 매우 방대하고 이 글의 본래 취지와는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편집으로 보인다.]

24) Kinsella, “Thoughts on the Latecomer and Homesteading Ideas”를 보라.

점유자 혹은 청구권자보다 못하다.²⁵⁾ 호페 교수가 자신의 글에서 선행-후행 구별을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이유 역시, 자유주의 이론에서 그 구별이 가지는 결정적 중요성 때문이다.²⁶⁾

25) *Louisiana Code of Civil Procedure*, Art. 3653를 보라. 인용해보자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 원고에게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

1. 피고가 이전 소유자로부터 또는 '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법원은 피고가 자기 재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판명할 것이다.
 2. 원고가 피고보다 더 나은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했을 경우, 법원은 피고가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판명할 것이다.
- 만약 당사자들의 소유권이 '공동의 창조자'에게 거슬러 올라간다면, 원고는 이전의 소유자로 추정될 것이다.

또한 *Louisiana Civil Code*, Arts. 526, 531-32. Yiannopoulos, *Property*, §§ 255-79 그리고 347 et pass를 보라.

26) Hoppe, *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pp. 141-44; idem, *The Economics and Ethics of Private Property: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and Philosophy* (Boston: Kluwer, 1993), pp. 191-93를 보라; 이 문제 그리고 관련된 사안에 대한 논의로는, Kinsella, "Thoughts on the Latecomer and Homesteading Ideas"; idem, "Defending Argumentation Ethics"; 그리고 idem, "How We Come To Own Ourselves."를 보라. 호페가 "The Idea of a Private Law Society"에서 설명한 바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이 희소하다고 인식하여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 신체를 수단으로 사용해 손에 쥔 자연적으로 주어진 모든 재화의 적절한 소유자이다. 정말로, 최초 사용자가 아니라면, 누가 그것들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 사용자, 혹은 세번째 사용자가 그래야 하는가? 그러나, 그런 식으로 추론한다면, 최초의 사람은 최초의 전용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두번째 사람이 최초 사용자가 될 것이고, 계순 그런 식으로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즉, 어느 누구도 최초의 전용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지 못할 것이고, 인류는 그 즉시 전멸할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최초 사용자가 모든 후발주자와 함께 문제가 되는 재화의 공동소유자가 되는 대안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공동소유자들이 그 재화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대안 역시 비경제적이다. 왜냐하면 이 대안은 처음으로 희소하다고 인식된 재화를 이용하려는 동기를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련하여, Anthony de Jasay, *Against Politics*. 그리고 이에 대한 추가 논의와 인용을 담고 있는 “Thoughts on the Latecomer and Homesteading Ideas,” 마찬가지로 “Book Review of Anthony de Jasay, *Against Politics*”를 참고하라. 상단의 19번 각주에서 전용된 사물에는 다른 소유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최초 소유자에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드 자사이의 논증을 설명하고 있다.

드 자사이의 ‘배제는 수립한다’는 발상은, ‘선행과 후행의 구별’이라는 호폐주의적 강조점과 함께 정주의 본질을 조명한다. 흔히 문제시 되는 사안은, 어떤 유형의 행위가 정주(혹은 호폐가 가끔 사용하는 용어 ‘내 것으로 만들’)를 구성하거나 충분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즉, 어떤 종류의 ‘노동’이 사물과 (반드시) ‘혼합’되는 것이고, 또 어떤 재산이 정주를 통해 확보되는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충분하게’ 정주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의 해답을 분쟁의 대상을 이해함으로써 유추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A가 점유하고 있는 (또는 이전에 점유하고 있던) 물건의 소유권을 B가 주장하는 경우, 분쟁의 ‘구조’ 자체가 분쟁의 대상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점유한다는 것이 무슨 기준에 입각한 것인지를 알려준다. 만약 B가 주어진 자원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는 어느 정도는 소유권의 본성에 따라 그것을 통제할 권리를 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다른 사람

종합하건대, ‘재산권’에 대한 자유주의적 입장은, 희소자원의 생산적이고 분쟁없는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자원에 대한 재산권을 특정 소유자에게 할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유권 지정은 무작위적이거나, 임의적이거나, 편향적이어서 안된다.²⁷⁾ 그 대신에, ‘소유자와 자원 사이의 객관적이고 상호주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결성의 실존’에 근거하여 소유권이 배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숙고한 바에 따르면, ‘최초 정주자’의 ‘변형’이나 ‘내것으로 만듦’, 혹은 ‘최초 전주자까지 추적할 수 있는 계약에 의한 재산권의 연쇄’가 연결성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²⁸⁾

이 이전에 소유권의 본성에 따라서 (분쟁중인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제했는가, 즉 다른 사람이 먼저 정주를 하였는지의 여부, 또 B가 후발주자인지의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 드 자사이의 ‘배제는 수립한다’ 원칙이 이 점을 반영하고 있다. 즉, 그의 원칙은 누군가 실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타적으로 자원을 통제할 수 있다면, 자기 재산에 대한 배제가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물론, 주어진 희소자원의 물리적 특성과 인간이 그러한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을 자원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데 필요한 행동의 특성을 결정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라스바드가 “Law, Property Rights, and Air Pollution”에서 적절한 기술적 단위(relevant technological unit)에 대하여 논의한 바를 참고하라; 또한 B.K. Marcus, “The Spectrum Should Be Private Property: The Economics, History, and Future of Wireless Technology” 그리고 idem, “Radio Free Rothbard”를 참고하라.

27) Hoppe, *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p. 12.

28) ‘계약의 소유권 이전 이론’에 대하여, Williamson M. Evers, “Toward a Reformulation of the Law of Contracts,”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1, no. 1 (Winter 1977): 3–13; Rothbard, “Property Rights

번영과 자유를 위한 최선의 사상

오직 자유주의자만이 ‘문명화’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 역시 상기한 몇 가지 사안을 어느정도 고려한다. 그들이 보기에, ‘정주자’는 그가 전용한 자원을 소유하고, 따라서 인간은 ‘대체로’ 자기 신체의 주인이다. “국가가 ‘법의 시행’을 통하여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않는 한에선” 말이다.²⁹⁾ 이

and the Theory of Contracts,” chapter 19 in idem, *The Ethics of Liberty*; Kinsella, “A Libertarian Theory of Contract.”를 보라.

- 29) 국가 법률과 헌법 조항은 종종 다양한 개인적 권리 및 재산권의 존재에 대하여 입에 발린 말을 하곤 하지만, 국가가 ‘법률에 근거하여’ 혹은 ‘임의적이지 않은 한’ 개인적 권리와 재산권을 규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함으로써, 자신들의 보장이 가식이었음을 드러낸다. 예컨대, **러시아 헌법**, 제25조, (“주택은 불가침하다. 연방법 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성립된 경우를 제외하곤,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갈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기업활동 혹은 다른 경제활동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재산을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가 있다.”); **에스토니아 헌법**, 제31조 (“에스토니아 시민은 상업 활동에 종사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협회 및 연합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법률은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역주: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1.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점이 자유주의자와 비자유주의자를 구별하는 주된 원인이다. 자유주의자는 일관성있게 침해에 반대한다. 여기서 침해는 재산권 경계에 대한 침입으로 정의되고, 또 신체에 대한 재산권은 자기소유에 기초하여 부여된다고 이해된다. 외부물체의 경우, 선행하는 점유 혹은 정주와, 계약상의 소유권 이전에 기초한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권리 체계는 자유주의자가 평화적인 상호작용과 협력, 즉 ‘문명화된 행위’를 일관되고 원칙적으로 고수하는 점에서 비롯된다. 아마 인간 행동에 대한 미제스의 견해가 이와 비슷하다는 점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미제스에 따르면, 인간 행동은 ‘불안’(uneasiness)한 느낌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다.³⁰⁾ 그리하여, 인과법칙에 대한 행위자에 이해에 따라 여러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이 사용된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불안의 제거이다.

문명인은 타인과의 폭력적 투쟁에서 불안을 느낀다. 한편으로, 그는 어떤 실용적 이유, 즉 주어진 희소자원을 통제하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등 우리의 헌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30) Ludwig von Mises, *Human Action*, 4th ed. (Irvington-on-Hudson, N.Y.: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1996), pp. 13-14, et pass.

는데 필수적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잘못된 힘의 사용을 피하고 싶어한다. 문명인은 동료와의 폭력적 교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 꺼림칙함과 불안을 느낀다. 아마도 그는 특정한 대상을 두고 다른 사람과 폭력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³¹⁾ 협력에 대한 본능은 사회적 진화의 결과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미제스가 지적했듯:

자신의 자아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주변 동료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보다 더 큰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³²⁾

이러한 불안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반대하는 희소자원을 둘러싼 폭력적 갈등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문명인은 ‘설득력있는/강압적인’ 통제에 대한 정당성을 추구한다. 공감(혹은 그 밖의 자유주의 근본규범을 채택하도록 자극하는 모든 것)은 특정한 형태의 불안을 유발하고, 이는 윤리적 행동을 발생시킨다.

문명인은 대인간 폭력의 사용에 있어 정당성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다. 생명 혹은 재산의 방어를 위해 폭

31) 자유주의 근본규범을 채택함에 있어 공감의 역할에 대한 추가 논의에 대해서는, 상기한 14번 각주를 보라.

32) Mises, *Human Action*, p. 14.

력을 행사해야 하는 불가피한 필요가 발생할 때, 문명인은 정당성을 추구한다. 당연히 문명인이 이성과 평화의 경향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러한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정당화는 결국 ‘담론’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평화적 활동이다.)³³⁾ 문명인이 추구하는 것은, 공평하고, 잠재적으로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고, 사물의 본질에 근거하고, 보편화될 수 있는 규칙과,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원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이다.

자유주의 재산권 원칙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후보로 부상한다. 그러므로, 만약 문명인을 폭력의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유주의자는 이 노력을 정말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이다. 자유주의자는 폭력에 대하여 진중하고, 원칙적이고, 본질적으로 반대하고, 같은 마음가짐으로 평화와 협력에 헌신한다.

상술한 까닭들을 고려한다면, 자유주의는 평화, 번영, 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회적 규칙을 일관성있게 선호하는 정치 철학이라 할 수 있다.³⁴⁾ 자유주의는 문명화된 근본규범을 만

33) 호페의 설명에 따르면, “정당화(증거 제시, 추론, 그리고 반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논쟁적 정당화다.” Hoppe, *The Economics and Ethics of Private Property*, p. 384; 또한 *ibid*, p. 413 역시 보라. 그리고 Hoppe, *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p. 130 *et pass*를 참고하라.

34) 이러한 이유로, 해즐릿(Henry Hazlitt)이 자유 철학의 새로운 이름으로 제안한 ‘협력주의’(cooperatism)는 상당히 설득력 있다. Henry

족시키는 유일한 규칙이, 가능한 한에서 일관성있게 적용되는 자기소유의 원칙과 ‘로크적 정주의 원칙’임을 인식한다.

그리고, 내가 다른 글에서 주장했듯이, 국가는 반드시 침해를 저지르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침해를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는 곧 아나키스트이다.³⁵⁾

Hazlitt, *Foundations of Morality*, p. xii를 보라.

35) Stephan Kinsella, “What It Means To Be an Anarcho-Capitalist,” *LewRockwell.com* (Jan. 20, 2004) 를 보라; 또한 Jan Narveson, “The Anarchist’s Case,” in *Respecting Persons in Theory and Practice*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2) 역시 보라.